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토록 하는 「주택법」이 개정(법률 제16811호, 2019. 12. 10. 공포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표시광고물 사본제출 의무(안 제58조제1항 및 제2항)

사업주체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을 표시 및 광고한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○○○○○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0. 0. 0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 1건(표시광고물 사본제출 의무)

대통령령 제 호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 및 제58조의2를 각각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으로 하고, 제3장에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(표시광고물의 사본제출 의무) ① 법 제54조제8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② 법 제54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해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 및 광고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

별표 5 제2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6조제3항 제1호	500
타. 법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106조제3항 제6호	500

부 칙

신·구조문대비표

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제58조(표시광고물의 사본제출 의무) ① 법 제54조제8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 ② 법 제54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해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 및 광고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
제58조(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)(생략)	제58조의2(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) (현행과 제58조와 같음)
제58조의2(입주자저축)(생략)	제58조의3(입주자저축) (현행과 제58조의2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제처 주택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320